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95호, 2023. 6.20. 공포, 12.2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법적근거 강화(안 제9조의5)

- 1)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강화

나.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안 제28조의5 등)

- 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율
- 2) 준비금 적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인증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 사유로 인한 인증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50조의6의 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을 위한 지급준비금
2.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준비금

- ⑤ 제4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 <u>4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u>⑥ 인증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u> <u>사유로 인한 인증의 승계에 필</u> <u>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u> <u>고시한다.</u>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50조의6의 준비금은 다</u> <u>음 각 호를 말한다.</u> <u>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u> <u>대출금 지급을 위한 지급준비</u> <u>금</u> <u>2.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u> <u>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되는 기타준비금</u> <u>⑤ 제4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u> <u>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20